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3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재원 · 정춘생 · 김성원
차규근 · 신장식 · 황운하
김준형 · 정혜경 · 박정현
김형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

의7까지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 중 “자는”을 “자(이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으로 한다.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또는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숙박요금 게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위반 사실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가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2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후단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u>자는</u>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 ----- ----- -----<u>자(이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라 한다)</u> <u>는</u>----- ----- -----.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u>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u>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u>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u>----- ----- ----- ----- ----- ----- ----- -----.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0조의5(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외
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숙박요금을 정하여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
은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
은 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 이
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또는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숙박요금 게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위반 사실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신 설>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가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의3. (생략) <u><신설></u>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u>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u>9의4. 제2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u>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
--	---

– 13 –